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2. 12(수) 10:00

#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59호
- 나. 제출자 : 운영회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1. 23.
- 라. 회부일자 : 2025. 1. 23.

##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정보 및 의원의 의정 활동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홍보활동의 원칙, 방법 및 홍보내용(안 제3조 ~ 제5조)
- 다.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제7조)
- 라. 홍보영상 등 제작(안 제8조)
- 마. 홍보매체의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안 제9조)
- 바. 자료관리(안 제10조)
- 사. 공모·참여행사 등(안 제11조)
- 아. 개인정보 보호(안 제1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29조
- 2) 「공직선거법」 제9조
- 3) 「저작권법」 제4조
- 4)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우리구 의회의 독립적인 권한 증대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활동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공모·참여행사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의회 홍보활동에 대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의회는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방법과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홍보영상 제작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자료의 관리, 공모 또는 참여행사 등의 운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금번 제정 조례안은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 및 성과를 구민과 소통·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홍보영상 및 간행물의 배포,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제공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 발생 여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또한, 2025년 1월 기준 전국 50개(서울 2개 포함)에 달하는 지방의회에서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 이에, 우리구 의회에서 의정 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소통하고자 홍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전국 의정 홍보 조례제정 현황 1부**

**2. 관련 법령 1부.**

【붙임 1】

**전국 의정 홍보 조례제정 현황**

-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운영 : 50개

<2025년 1월 기준>

제정연도	의 회 명	의회수	비 고
계		50	
2024	이천시, 화천군, 김포시, 안성시, 부산 북구, 창원시,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서구, 시흥시,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성군, 경북도, 수원시, 거창군	14	
2023	평택시, 대전 대덕구, 나주시, 김천시, 사천시, 진천군, 광주 동구, 논산시, 거제시, 인천 계양구, 군포시, 함양군, 대전 중구, 용진군, 양평군, 하남시, 파주시, 서울 노원구, 전남도, 안양시, 인천시, 전북도, 영천시	23	
2022	성남시, 천안시, 무안군, 경남도, 철원군, 김제시, 진주시, 의성군, 광양시	9	
2021	부산시, 양주시, 완주군, 부산 동래구	4	

※ 조례 제정일 빠른순 정렬

## 관계 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 공직선거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6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2016. 1. 6., 2020. 12. 22.>

## □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2. 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1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4조(품위등) 방송광고는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12. 24.>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4.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5. 삭제 <2019. 9. 23.>
6. 삭제 <2014. 12. 24.>
7.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8.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9.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10.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5조(공정성)** ① 방송광고는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